九州大学学術情報リポジトリ
Kyushu University Institutional Repository

戦時中の朝鮮人徴用工の賃金と貯金について ： 炭鉱企業の資料からわかること

三輪, 宗弘
九州大学附属図書館記録資料館 ： 教授

https://hdl.handle.net/2324/4067073

出版情報：第221回圓光大学校圓佛教思想研究月例研究発表会資料集, pp.19-35, 2018-04-27. 圓光大学校圓佛教思想研究院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KYUSHU UNIVERSITY

제2발표

전시중 조선인 징용공의 임금과 저금에 대하여

– 탄광기업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 –

미와 무네히로(三輪宗弘)
큐슈대학(九州大學) 교수

Ⅰ. 비판받지 않았던 연구와 자의적인 자료 이용

전시기의 이주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자료는 많이 남아 있다. 특히 탄광기업은 기록이나 자료를 남기고 있다. 일본정부나 업계단체가 다양한 기록이나 보고서의 제출을 기업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록이 남은 것이다. 체불임금에 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GHQ/SCAP가 공탁(供託)하여 체불임금(도망)을 지불하도록 일본정부나 기업에 명령한 관계로 자료가 남아 있고, 그 결과 임금정보가 남은 것이다. 1인당 1개월분으로 생각하면 된다(노동성 조사, 「조선인에 대한 체불임금(未拂債)」, 大藏省, 平成 12년도 국립공문서관 츠쿠바 분관(分館) 소장; 노동성 조사, 「조선인에 대한 체불임금 채무조사」, 「공탁정령(供託政令)」, 국립공문서관 소장)(체불임금을 둘러싼 재일조선인연맹의 암약(暗躍)은 RG554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차자료에 준거해서 소화 14년(1939) 이래로 한반도에서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의 계약내용, 임금, 노동 상황을 밝히고자 한다. 일차자료에 기초한 본격적인 연구와 분석을 하여, 지금까지의 연구 축적을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노동실태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반체제나 좌익운동가 · 활동가가 일본정부를 공격하는 재료로서, 또는 반전평화활동의 일환으로서, '강제연행'하여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데려갔다고 하는 의도(가해)를 가지고 전시 중의 조선인노동자의 일본 이주를 그리는 연구자가 많았다. 조선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박경식 교수가 쓴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미래사, 1965)이 행된 이래로, 아무런 비판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작동하여,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말처럼 본격적인 비판은 행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검증은 실시되지 않았다. 박경식 등은 '식민지 – 피식민지'라고 하는 이항대립으로만 이해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사람 · 사물 · 돈 · 기술 · 문화의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는 착안하지 않고 '경제적인 착취'의 측면만 강조하였다.

그런데 박경식의 『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과 토노무라 마사루(外村大)의 『조선인강제연행』(岩波書店, 2012)은 자신의 설에 유리한 곳만을 인용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가령 토노무라의 『조선인강제연행』의 178쪽에는 "자고 있는 틈을 타거나 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연행하는 등"이라고 쓰면서, 실로 폭력적인 '강제연행'이 행해진 결정적 증거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았다면 "두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말이 가능할까? 이상한 일이다. 노동자 모집의 북탄(北炭) 노무계(勞務係)의 출장보고서(홋카이도대학 부속도서관 소장)의 일부를 교묘하게 발췌하여, 사실인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각색해 나가는 것이다. 자신의 형편에 유리하게 전체 문맥에서 분리

시켜 특정 부분만을 인용하고, 그것을 일부러 강조하여 마치 조선인 노동자의 대다수가 “막무가내로 연행”된 것처럼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뒷부분에 첨부한 「자료 닛소천염탄광(日曹天鹽炭鑛) 1」에 실려 있는데, 연고모집(緣故募集)에 의해 조선인 노동자가 홋카이도의 탄광에 자신의 의지로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을 부르는 일도 행해지고 있다. 「자료 닛소천염탄광 2」에 가족을 부르고 있는 표를 보면, 부모, 아내, 자식 이외에 일꾼으로 형제나 삼촌, 사촌형도 부르고 있다. 「자료 닛소천염탄광 3」에서는 매형이 일하고 싶다고 하여 「증명서」 발행을 천염경찰서에 의뢰하고 있다. ‘노예노동’이나 ‘강제연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친척을 홋카이도의 일조천염탄광에 부르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야시 에이다이는 인터뷰를 자의적으로 넣으며 논지를 전개하고, 사진에는 자신의 사관(史觀)에 유리하게 날조하거나 엉터리 캡처를 달고 있다(『사진기록 치쿠호(築豊) · 군함도 – 조선인 강제연행, 그 후』(2010, 弦書房); 『청산되지 않은 소화(昭和) –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岩波書店, 1990. 사진 · 글 하야시 에이다이, 서문 박경식, 해설 다카사키 소우지(高崎宗司)). 하야시 에이다이는 인터뷰 기록도 간행했는데, ‘강제연행’이라는 말을 넣고 있다. 임금에 관해서는 무급이었다거나, 강제 저금을 시켰다거나, 감시숙소(タコ部屋)나 헛간에 가두어 자유로운 행동이 불가능했다거나, 도망한 것은 노동환경이 가혹했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다. 위험한 곳은 조선인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다는 등,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인터뷰 기사나 사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일본인의 갱내 노동자에 비해 조선인 노동자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1,000명당 5명). [그러나] 전쟁터에 군인으로 징용된 일본인 노동자보다 사망률이 훨씬 낮다.

Ⅱ. 2년 계약과 계약갱신

큐슈대학 기록자료관에는 조선인 노동자의 자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다나카 나오키(田中直樹), 『근대 일본 탄광노동사 연구』(草風館, 1984)에서 실시되었다.

이바라키현립(??城縣立)역사관에는 상반탄광(常磐炭鑛)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 조선인 노동자나 중국인 포로와 관련된 자료는 나가사와 시게루(長澤秀)에 의해 자료집으로 간행되어, 많은 연구자가 이용하는 기본 문헌이 되고 있다. 이바라키현립역사관의 자료는 마이크로필름으로 공개되어 있어서 열람가능한데,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 관련 자료도 남아 있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이고, 추가로 1년이나 2년의 형태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이주 당시에는 ‘2년 계약’이 많았는데, 소화 14년~15년에는 1년이나 3년의 경우도 있었다. 일본광산협회, 『반도인(半島人) 노동자에 관한 조사보고』, 일본광산협회자료 제78집). 소화 14년에 이주한 노동자는 우수했기 때문에, 탄광기업은 일손부족도 있고 해서 두 번째 갱신한 경우에는 “일시 귀국이 허락되고 급여를 2배로 한다”(상반常磐의 탄광)고 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면서 붙잡아 두려 했다. 홋카이도의 일조천염광업소에서는 설득하거나 가족 초청, 일시 귀국 등으로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두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2년 후에 계약갱신 한 조선인노동자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었는지, 남아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상세하게 추적하고 있다(홋카이도에서는 6개월 갱신이 많다).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도망간 조선인 노동자의 수나 어떤 업종(다른 탄광, 방공호 파기, 도로공사, 농업 소작 등)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큐슈에서는 40% 정도가 도망쳤음을 알 수 있다(이동한 곳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홋카이도에서는 20% 정도이다. 홋카이도는 도망가도 곧바로 발견되거나 배가 고파 돌아오거나 하였다. 각 현의 모집에서 탄광에서 직장을 구한 일본인도 도망치고 있다. 소화 19년(1944)이 되면 일반징용과 현용(現用)징용이 조선인 노동자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징용과 종래의 2년 계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시 귀국한 조선인 노동자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탄광에 돌아왔는지, 만기 귀국한 노동자가 다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 나아가서는 도망친 조선인이 일단 조선에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는지 여부도 실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일조천염탄광에서는 재계약을 맺고 조선에 일시 귀국했지만, 천염탄광에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브로커의 발동기선(發動機船)에서의 밀입국자 숫자의 경우에는, 기본 문헌인『재일조선인 처우의 추이와 현황』(法務研修所, 1995, 41쪽)에서는 소화 13년(1938)이 3,469명, 소화 14년이 5,432명, 소화 15년이 1,264명, 소화 16년이 858명, 소화 17년이 1186명이었는데, 아마도 전시 중에 불법도항(渡航)하거나 되돌아간 조선인 노동자는 상당수였을 것이다. 가명을 사용하여 다시 되돌아왔는지 여부, 조선에 일시 귀국하여 원래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농민이 다시 바다를 건너 일본에서 직장을 찾았는지 등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의 19쪽에는 "소화 14년 이래의 약 60만명의 동원노무자 중에서 도망, 소재불명이 약 22만이고, 기간만료 귀국자와 불량송환자, 그리고 기타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현재 수는 동원근로자의 반도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나는 어느 정도의 도망자가 한반도에 돌아갔는지, 그 후 어떤 일을 하였는지, 혹은 다시 일본에 밀입국했는지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큐슈광산학회지의 좌담회(전쟁말기)에서 문제를 일으켜 조선에 강제 송환된 조선인 노동자가 탄광에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탄광기업은 선발단계에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일단 강제적으로 돌아간 조선인 노동자가 다시 일본에 오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성과주의 임금(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별하는 규정은 없다)

메이지 이래로 치쿠호(筑豊)탄광에서는 성과주의 임금이 기본(특히 채광採鑛현장)이었는데, 나는 이주조선인 노동자에게도 성과주의 임금이 기본적인 기준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소화 14년 이래의 탄광대기업)와의 사이에서 임금을 차별하는(구별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 메이지 아카이케(赤池)의 광부의 데이터(하야지 에이다이가 간행한 자료집에 수록)를 보면,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이 높은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일본인 노동자의 임금이 높은 경우도 있다. 이것은 기량에 의한 차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인 노동자의 기량이 좋아지는 반면에, 일본인 광부는 갑종이나 을종에서 병역에 나아가 숙련광부가 현장을 떠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하에서 소개하겠지만, 홋카이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스미토모(住友) 코우노마이(鴻之舞) 금속광산의 임금데이터가 있는데, 직종, 나이, 학력, 경험에 주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메모 1] 사례

금속광산인 '스미토모 코우노마이 탄광'의 임금 데이터에 대해서

57923「해고 광부 명단」(만료자)

이 명부는 기간 만료자로서 1년 7개월간 일한 광부 리스트. 소화 16년에 만기하여 계약 해지. 우수한 노동자. 소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높은 학력자가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두꺼운 표지의 앞뒤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전직(농업, 광산)도 있다. 임금(鑿岩機夫, 支柱夫, 手堀夫)이 3단계(일본인 광부에 비해 8부(分), 9부, 기록 없음(一人役で同じ))로 되어 있는데, 기술능력에 따라 임금격차가 있었을 것이다. 운반부(運搬夫)는 임금차이가 없다. 이 데이터는 귀중하다. 운반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9부에서 시작하는 광부 중에는 경험자가 많다. 소학교를 나온 자도 9부, 비교적 임금이 높은 직종으로 가는 경향(광맥을 식별하는 능력이 필요).

鑿岩機夫8分 : 1.36、鑿岩機夫9分 : 1.53　鑿岩機夫 : 1.73 (1.74)
坑内運搬夫 : 1.2 (1.22、1.23)　運搬夫 : 1.30 (1.20도 있음)　坑外運搬夫 : 1.33
手掘夫8分 : 1.20　手掘夫9分 : 1.35　手掘夫 : 1.54
支柱夫9分 : 1.53 (1.56)　支柱夫 : 1.74
坑内鉄管夫 : 1.40 (1.43)
傭夫雑役夫 : 1.30 (1.33)
坑外鍛冶夫 : 1.30 (소화 2 년 貝島炭礦→大工)

57924「해고 광부 명단」만기 귀국. 소화 17년. 재미있다. 소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율이 늘고, 만기를 맞이하는 사람 수는 줄어든다. 소화 14년에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나는 그들이 조선에 귀국한 후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 일본에 다시 왔는지를 조사하고 싶다. 이것을 알 수 있으면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인데, 자료의 제약이 있어서 사람을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57895「반도(半島) 노무원(勞務員) 통리강요(統理綱要)」(소화 16년 1월)

> "임금은 내지인(內地人)의 약 80% 정도의 수입이 되도록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대체로 월수입이 50엔 정도에서 120엔 정도가 되도록 하는 방침이다. 그 취지는 반도인은 내지인에 비해 그 능력이 약 80% 정도가 된다고 예상되어, 임금에 있어서 각각 그 능력의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치한다."(86쪽)
> "저금이나 가정송금 등을 장려하고 그 절차에 대해 가능한 한 도와주고 협력할 것. 송금액수가 너무 많으면 반도(半島)의 여성이 나태해져 낭비하기 때문에 최저생활비로 20엔 정도를 송금하는 것은 괜찮다. 매달 현금 소지는 10엔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저금하도록 하는 게 좋다."(56쪽)

스미토모 코우노마이 광산 관련 자료. 50개월 이상의 임금 데이터가 있는데, 저축액, 물품구입 등이 불분명. 임금 데이터가 직종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음. 조선인과 일본인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소화 20년은 같은 표 안에 쓰여 있다. 정련(精練), 공작, 서무(庶務), 병원, 용부(傭夫), 임시(臨時)의 직종에 따라 임금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모리야 요시히코(守屋敬彦)의 연구 : '임금'과 '실제 지불액'을 비교한 것일 것이다. 50개월 이상의 임금 데이터이지만,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직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대단히 대충 대충한 연구임을 알 수 있다. 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시대가 내려가면 가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물품대금이 늘어난다.

(나라면 직종을 나누고 기간을 잘라서 궁리를 할 것이다. 저축액, 물품대금, 일한 날짜 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렵다.)

[메모 2] 임금 정하는 법

연령, 경험, 학력, 성과주의, (제반 수당) 기본급을 정하는 방법인데, 나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이 고려되고, **직종에 따라 체계가 다르다**. 갱내와 갱외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교외가 노동시간은 길다.

[메모 3] 홋카이도 탄광노무부장 마에다 하지메(前田一)의 『특수 근무자의 노무관리』(山海堂, 昭和 18년)는 기본문헌으로, 당시에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 홋카이도대학 부속도서관에는 북탄(北炭)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 부산에서의 모집 상황 등 귀중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이미 많은 자료가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어 손쉽게 읽을 수 있다. 홋카이도의 탄광은 조선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모집 시에 무리하게 '강제연행' 형태의 모집이었다는 점을 다루면서,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집의 실정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폭력적인 노무동원이 행해졌다고 하면 왜 모집할당 숫자에 미치지 못했을까? 한반도에서 그리고 일본에 도착한 후에 도망가는 조선인 노동자가 많았는지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으로의 도항을 일본에 밀입국하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고, 게다가 준비금까지 받고서 도망가는 것이다.

[메모 4] 미국 국립공문서관의 GHQ 문서 RG 331에는, 일본이 패전한 후에 일단 한반도에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밀입국을 도모한 통계 자료가(Illegal Entry Koreans), 일(日), 주(週), 월(月) 단위로 소화 20년에서 24년까지 남아 있다. 밀입국을 시도한 사람수나 밀입국으로 체포된 숫자나 밀입국에 성공한 추측 합계 등을 실마리로,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가 일단 한반도에 돌아갔지만 왜 일본에 되돌아오려고 했는지, 그 실태를 통계적으로 밝히고 싶다. 방대한 양의 자료가 남아 있다. 이것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아마도 전시 중에도 밀입국이 행해졌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메모 5] 집행유예 중의 이주노동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강제송환되는 재판기록도 남아 있는데, 이와 같은 재판기록도 잔존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말로는 재판기록은 입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집행유예 중의 조선인 노동자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점이다.

Ⅳ. 강제저금과 임의저금의 실태

재일조선인 연구업적이 있는 니시 등이 강제저금이라는 형태로 실제로 받은 임금이 적다고 서술하였는데, 전시 중의 저금의 실태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서 실태 규명에 임하고 싶다. 일본광산협회의 「반도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보고」(http://dl.ndl.go.jp/info:ndljp/pid/1071122)를 읽는 한, 임의저금의 비율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탄광에 따라서는 송금액과 저금액에 편차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 달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쪽, 28쪽).

① 시즈카리광산(静狩鑛山)의 사례에서는 임의저금은 206명이 하고 있는데 1인당 1개월 평균 20.17원인데 반해서, 강제저금(회사규정에 의한 규약저금, 국민저금)은 225명이 하였고 1인당 1개월 평균 2.41엔이었다.

② 스미토모 코우노마이 광산에서는 1940년 7월의 송금액은 평균 31.94엔이고 저금은 36.78엔이었다. 스미토모 코우노마이 광산은 "회사에서 강제로 저금하도록 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저금을 장려하였고 통장은 기숙사 전임 담당자에게 보관하였다"(47쪽)고 쓰여 있다.

③ 이요광산(伊予鑛山)에서는 "강제저금 - 취득금의 100분의 5, 애국저금 - 매달 1엔"이고, "임의저금은 회사에 보관하고 연 6푼 5리의 이자를 부담하며, 저금통장을 주어 급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138쪽)

④ 벳시광산(別子鑛山)에서는 "임금 지급일에는 곧바로 저금한다. 송금액을 정하게 하고 공제한다. 저금과 송금 상황은 별도 항목과 같다. 대체로 성적이 양호하지만 지도가 느슨해지면 급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 낭비의 경향이 있다."

⑤ 히가시미조메탄광(東見初炭鑛)에서는 "저금의 1할은 애국저금으로 회사에서 공제저축하게 한다." "기타 저금은 임의로 각자 저축하게 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다.

⑥ 산요무엔찬광(山陽無煙炭鑛)의 「송금 및 저금 상황」은 매달 송금 평균액은 57엔 28전이고, "매달 저금 평균액 38엔 13전 회사임의저금(이자 6부 3리)"이고, "애국저금 1개월 약 취득의 100분의 5. 이 외에 애국저금조합을 결성하여 저금장려를 도모하고 있다."(205쪽)라고 쓰여 있다.

⑦ 요시쿠마탄광(吉隈炭鑛)에서는 송금이 "평균 27엔 50전"이고 저금이 "평균 6엔 73전"이다. "애국저금 및 적립금은 우편저금으로 하고, 통장은 회사에 보관한다. 애국저금은 가족이 있는 사람은 3엔에서 5엔까지, 독신은 5엔에서 10엔까지 저금하고, 이 외에 임의저금으로 본인 신청 금액을 회사에 저금하고, 통장은 본인에게 주어 임의로 출납한다. 이자는 연 5부이다."

⑧ 히라야마탄광(平山炭鑛)은 다음과 같다. 1940년 7월의 송금평균액은 25엔이고, 평균 저금액은 11엔 7전이었다. '애국저금'은 가족이 있는 자는 "출근 일인당 25전,"을 독신은 "일인당 35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이것을 애국저금으로 한다. 수시로 사변공채(事變公債)나 저축채권 구입에 충당하게 하고, 회사에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고 본인이 퇴직할 경우에 이외에는 주지 않는다." '강제저금'에 관해서는 "이 외에 각자에게 30엔까지의 저금액을 강제하고, 매달 10엔을 본인의 임금에서 공제적립하여 회사에 맡기고, 본 저금에 대해서는 연간 7부의 이자를 주는데, 교풍회(矯風會) 회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나 본인이 퇴직할 경우 이외에는 인출을 금한다." '보통저금'은 "저금액 30엔(애국저금은 제외)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저축은 본인의 자의에 의하지만 가급적 이것의 실행을 장려하여 자발적 저금을 하게 한다. 본 저금은 회사에서 이것을 맡으면서 연간 10부의 이자를 준다. 본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244쪽)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30엔까지 강제적으로 저금을 시켰다고 한다.

⑨ 마찬가지로 30엔까지 저금을 시킨 것은 오노우라탄광(大之浦炭鑛)에서 "애국저금은 1일 표준보수의 2일 반 분량인 평균 5엔 50전, 교풍회 규약저금은 30엔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임의에

맡긴다. 모두 다 우편저금으로 통장은 각 탄광마다 회계 담당이 보관한다."(269쪽)

나는 일본인의 저금장려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저금장려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독신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추적하고 싶다. 적은 사례로 전체를 논하지 않도록, 많은 사례를 찾아서 상세한 검토를 하고 싶다. 나는 조선인 노동자의 저금에는 노름이나 화투와 같은 도박에 의한 돈의 유실이나, 음주 등에 의한 낭비를 피하는 측면, 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측면, 조선에 돌아간 후의 생활보장의 확보와 같은 면도 컸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선인 노동자의 저금 인출이나 가족에의 송금방법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이해없이 강제로 저금하게 했다는 근거를 조사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생각이다. 임의보험은 개인의 신고로, 단신 조선인 노동자의 저축률은 높다. 특히 우수한 노동자의 저축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임금이나 송금액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닛소천염(日曹天鹽)에서는, 소화 20년의 자료에서는, 얼마를 송금했는지 등을 행정기관을 통해 가족에게 알리고 있다.